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488

발의연월일: 2025. 3. 31.

발 의 자:이인선·강선영·고동진

김성원 • 박충권 • 정동만

백종헌 · 김희정 · 정점식

천하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식목일(4월 5일)은 이전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이었으나, 2005년 6월 규정이 개정되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음.

그러나 최근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32건의 대형 산불로 3만5357ha 규모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고, 최근 영남지역 대 형산불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중에 있어 어느 때보다 산림 조성에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야 할 시기라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산불로 인한 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, 소실된 산림자원을 복귀하는 한편,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4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식목일(4월 5일)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공휴일) 공휴일은 다음 각	제2조(공휴일)
호와 같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식목일(4월 5일)
<u>4.</u> ~ <u>10.</u> (생 략)	<u>5.</u> ~ <u>11.</u> (현행 제4호부터 제1
	0호까지와 같음)